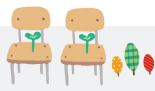


Q & A



Q : 기존 기초생활수급자도 새로 신청해야 하나요?

A : 기초생활수급자가 기존 교육급여 수급자이므로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.

Q : 교육급여를 다른 급여와 같이 신청할 수 있나요?

A : 기존과 같이 '기초생활보장'을 통합신청(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)할 수도 있으며, 본인 선택에 따라 교육급여만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.

Q : 교육급여만 신청하는 장점이 있나요?

A :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는 통합 신청이 유리합니다. 단,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이와 관련된 자료제출이나 조사를 받지 않으셔도 되기 때문에 부양의무자가 있다면 교육급여만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.

Q : 온라인 신청은 되지 않나요?

A : 국민의 기본적인 최저생활보장과 사각지대 방지를 위해 기초생활보장 급여신청 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과의 면밀한 상담과 대면 조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.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해당 읍·면·동 주민센터를 방문 하셔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Q : 법정차상위대상자(본인부담경감 대상자, 장애수당 대상자,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등)입니다. 교육급여도 받을 수 있나요?

A : 법정차상위 대상자가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, 교육급여 지원과 함께 법정차상위의 각종 감면 혜택을 계속적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

Q : 초·중·고 학생 교육비를 받고 있습니다. 저도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?

A : 교육급여와 초·중·고 학생 교육비 지원은 선정기준과 지원내용 등이 달라 둘 다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. 다만, 고교 입학금·수업료는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.

참고 초·중·고 학생 교육비 지원

선정 기준	교육감이 정하는 저소득층 초·중·고 학생 시도교육청별로 다르나, 최저생계비 120%~150% 이하		
	※ 시도교육청별로 상이 (시도교육청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)		
지원 내용	지급대상	지급금액	
	초등학생	급식비	중식비 전액
	중학생	방과후 수강권	연 60만원 내외
	고등학생	교육정보화 지원	PC, 인터넷통신비 등 연 21만원
	고등학생	입학금	연도별·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전부
		수업료	
	학교 운영지원비		

Q : 교육급여 보장가구 및 소득·재산조사 산정범위는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과 동일한가요?

A :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가구 구성 및 소득·재산조사 산정 방식을 준용합니다. 단,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부양의무자 관련 서류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



상담문의

교육급여 콜센터 1544-9654 (7월 1일 개통예정)

보건복지부 콜센터 129

“더 많은 분들에게 교육급여를 지원해 드립니다.”

지금 읍·면·동 주민센터로 신청하세요!!



1

신청방법 안내

신청방법은?

신청 장소
읍·면·동 주민센터

신청시기
▶ 2015년 6월 1일부터(통합급여)
▶ 교육급여 단독신청은 7월 1일부터

첫 지급시기
2015년 9월 25일부터

구비 서류

- 동 주민센터 비치 서류
 -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(변경) 신청서
 - 소득·재산신고서
 -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
- 신분증, 급여를 받고자 하는 통장 사본
- ※ 조사과정에서 위 구비서류 외 임대차계약서, 부채증명 서류 등 담당공무원이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교육급여만 신청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관련 서류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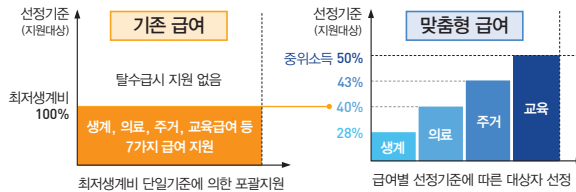
초·중·고 학생 교육비지원을 이미 받고 계시는 분들도 교육급여를 신청하시면 소득수준에 따라 초등학생 부교재비, 중학생 부교재비·학용품비, 고등학생 학용품비·교과서대를 추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2

새로운 교육급여제도 안내

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으로 바뀌었습니다!

전부를 지원하거나 지원하지 않는 단순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개인의 상황에 맞춰 급여를 지원합니다.



더 많은 분들이 교육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!



- 1 선정 기준이 완화됩니다.
중위소득 40% → 중위소득 50%로 확대 (4인가구 월167만원 → 월 211만원 수준)
- 2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.

그동안은 가구의 소득이 낮아도 따로 살고 있는 할아버지, 할머니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충분해 가구를 부양할 수 있으면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지만, 이제는 부양의무자와 상관없이 가구의 소득이 낮으면 급여를 지급합니다.

중위소득이란?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별로 순위를 매겼을 때 한가운데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'15년 4인가구 기준 422만원입니다. 따라서 중위소득 50%는 중위소득의 절반인 4인가구 기준 211만원입니다.

부양의무자란?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입니다.

소득인정액이란? 급여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일정한 방식으로 계산하여 도출한 값입니다.

$$\text{소득인정액} = \text{소득평가액} + \text{재산의 소득환산액}$$

※ 초·중·고 학생 교육비지원 사업과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.

3

교육급여 지원

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입학금·수업료·학용품비 등을 지원합니다!

지원 대상은?

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% 이하이면서, 초·중·고 재학중인 학생을 둔 가구

▶ 2015년도 교육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(중위소득 50%)

가구원 수	1인	2인	3인	4인	5인	6인
월 소득인정액	78만원	133만원	172만원	211만원	250만원	289만원

지원 내용은?

구분	급여종류	부교재비	학용품비	교과서대	입학금 / 수업료
초등학생		38,700	-	-	-
중학생		38,700	52,600	-	-
고등학생		-	52,600	129,500	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
지급횟수	연1회	26,300원씩 연 2회	연1회	입학금은 신입생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	

지원 절차는?

- 1 신청·접수
읍·면·동 주민센터
- 2 소득·재산 조사
시·군·구
- 3 보장결정
학교 (교육청)
- 4 급여지급
교육청

지급 방법은?

신청 후 30일 이내에 우편으로 급여지급여부를 알려 드립니다. (특별한 경우 60일까지 연장가능)

- 학용품비, 부교재비, 교과서대금 : 수급자 전용계좌로 지급
- 고등학생 입학금, 수업료 : 학교로 직접 지급
- ※ 수급자가 입학금 또는 수업료를 학교에 이미 납부한 경우, 납부하신 금액을 환급해 드립니다.

